훈련 위탁계약서

**제1조(계약의 주체)** **“ ”**(이하 “갑”이라 함)에 대한 “㈜유러닝”(이하 “을”이라 함)의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No | 훈련과정 명 | 훈련기간 | 1인당  훈련비(원) | 훈련  인원(명) | 훈련비합계(원) |
|  |  | 00.00.00~00.00.00 |  |  |  |

**제2조(계약금액 및 지급)**

가. 총 계약 금액은 **원으로** 한다.

본 금액은 1인당 훈련비 \* 교육인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며, 교육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.

나. 계약금액은 훈련개시 전까지 지급한다.

은행명 : 우리은행 계좌번호:1005-803-215657 예금주: ㈜유러닝

**제3조(성실의무)**

가.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“갑”은 “을”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기지급 된 훈련비를 “갑”에게 환불한다.

다. “을”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내용과 인정 신청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정ㆍ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“갑”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“을”이 책임을 진다.

**제4조(해석 및 합의)**

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**년 월 일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갑** |  | **을** | 유러닝 평생교육원 |
| **주소** |  | **주소**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,  413호(가산동, 대륭테크노타운19차) |
| **대표이사** | (직인) | **대표이사** | 한 철 |